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안 번호	236
----------	-----

제출연월일 : 2016. 6. 15(수)
제 출 자 : 장문혁 대표의원
찬 성 자 : 이범연, 함명섭,
박찬원, 박종욱
임영순 의원

1. 주문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심사기간은 2016년 6월 20일, 1일간으로 한다.

2. 제안이유

가. 평창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평창군의회위원회 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심 사 제 획

1. 활동목적

- 심도 있는 심사로 최고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신속한 의사진행

2. 심사안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조례안 심사
 1.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2.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6.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활동기간

- 2016년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한다.

4. 구성

- 이범연 의원, 함명섭 의원, 박찬원 의원, 박종욱 의원, 장문혁 의원,
임영순 의원

5. 운영계획

일시	차수	내 용	비고
2016. 6.20 (월)	제1차 조례특위 (13:30)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3. 평창군 긴급복지지원 조례안 4.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창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평창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8. 평창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